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79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박수영 의원안)	3
2.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박수영의원안)	8
3.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박수영의원안)	15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23
가. 제도 개요	23
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용분 소득공제 신설 등(박용갑의원안, 박수영 의원안)	26
다. 전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박수영의원안)	37

I. 개요

1.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79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 23.

(3) 회 부 일 : 2025. 1. 24.

나.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2025년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안 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나.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3 신설)

이익 배당 또는 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익을 증가시킨 상장기업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함.

2)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안 제100조의34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주식 보유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일부에 대해서는 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25퍼센트의 세율로 분리 과세 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공제항목 확대 및 공제율 상향(안 126조의2 개정)

1) 2023년 과세기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에게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도록 함.

2)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도록 함.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박수영 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중소기업 대상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안 제28조의5 신설) ○ 공제대상: 중소기업 ○ 감가상각 특례 대상 자산: -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특례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속상각 허용 ○ 취득기간: 2025.1.1.~2025.12.31 ○ 시행일: 공포한 날

* 박수영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99)

☐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설비투자자산)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이를 통하여 감가상각비를 조기에 손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사업용 자산투자에 따른 세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투자 초기 이익을 적게 발생시켜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루고 투자 금액을 조기 회수할 수 있어 투자 초기 세수가 감소하게 되지만

기업의 투자 집행 효과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음.

- 중소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은 2021년 말 적용기한이 종료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¹⁾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다시 도입하려는 것임.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특례는 2013년도 9월에 도입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 시행되었음. 당초 도입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2016년도 세법개정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였으며, 2017년 6월 30일로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음.

이후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에 따른 가속상각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경우 신성장사업화시설, 연구·시험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일부 혁신성장투자자산을 대상으로 가속상각을 인정하는 제도로 두 차례 적용기한을 연장한 이후 2021년 말 일몰이 도래하였음.

1)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2022년 세법개정에서는 에너지공급망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국제 에너지 가격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혁신성장투자자산 중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1년간에 한하여 도입하였고, 이후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하였으며 현재 일몰이 도래한 상황임.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특례제도 연혁]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대상기업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대상자산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공구,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신성장사업화시설, 연구·시험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요건	전년 대비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경우				-	
적용기간	'13.9 ~'14.3	'14.10 ~'15.12	'15.12 ~'16.6	중소: '16.6 ~'17.6 중견: '16.1 ~'17.6	'19.1.~'21.12	'23.1.~'24.12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4

-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가속상각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연도별·기업규모별 설비투자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잠정)
합계	167.7	166.2	166.4	213.0	223.6	220.5	228.4
대기업	119.3	123.6	133.3	174.5	179.5	174.7	182.2
중견기업	28.2	24.6	24.1	27.0	30.1	30.3	30.3
중소기업	20.2	18.0	9.0	11.5	14.0	15.5	15.9
제조업	8.4	7.1	6.1	6.5	8.4	8.8	9.2

자료: KDB 미래전략연구소, 각 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최근 설비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설비투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으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가 도입되더라도 이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를 이연하는 효과만 있으므로 투자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에 따라 시설의 신고내용연수 기간을 줄이는 가속상각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액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나, 그 다음 과세기간의 감가상각액이 감소함

에 따라 손금액도 감소하여 다음기의 법인세 부담은 늘어나게 됨.

즉,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따른 가속상각제도는 전체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보다는 이미 예정된 투자를 조기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둘째, 최근 반도체, 자동차, 기계장비 등 업종의 설비투자 증가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한국산업은행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5년 설비투자 계획 전망]

(단위: 조원)

구 분	금액			증가율	
	2023	2024 (잠정)	2025 (전망)	2024 (잠정)	2025 (전망)
전체	220.5	228.4	233.0	3.6	2.0
대기업	174.7	182.2	183.8	4.3	0.9
중견기업	30.3	30.3	31.3	0.1	3.2
중소기업	15.5	15.9	17.9	2.4	12.8
제조업	134.4	144.8	147.5	7.7	1.9
대기업	113.2	122.4	123.6	8.1	0.9
중견기업	12.4	13.2	13.6	6.7	3.5
중소기업	8.8	9.2	10.3	3.8	12.7
비제조업	86.1	83.6	85.5	△2.8	2.2
대기업	61.5	59.8	60.2	△2.8	0.8
중견기업	17.9	17.1	17.7	△4.4	3.0
중소기업	6.7	6.7	7.6	0.7	12.9

자료: KDB 미래전략연구소, 2024년 설비투자계획조사, 2024. 12.

문 의 처

02)6788-5154

2.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박수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0조의33 신설) ○ 적용대상: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 제외 ○ 공제요건: 주주환원 금액(이익 배당 및 자사주 소각)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공제대상: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증가분 *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 ○ 공제율: 5% *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최저한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 ○ 적용기한: 2027. 12. 31.까지 ○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적용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이익을 배당하거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박수영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99)

□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여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주주환원 금액(이익 배당 및 자사주 소각)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

상 증가한 경우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공제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며, 공제율은 5%임.

□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rice to Book-value Ratio, PBR)²⁾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양상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음.

2023년 말 기준 PBR은 1.05였고, 이전 10년 평균 PBR은 1.04였음. 2023년 이전 10년 평균 PBR은 신흥국 평균은 1.58이고, 선진국 평균은 2.50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임.

[주요국 PBR 현황]

구 분		신흥					선진			
		한국	대만	중국	인도	평균	미국	일본	영국	평균
PBR	2023년 말	1.05	2.41	1.13	3.73	1.61	4.55	1.42	1.71	3.10
	10년 평균	1.04	2.07	1.50	3.32	1.58	3.64	1.40	1.71	2.50

자료: 유관기관 합동 보도자료(‘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 2.).

이에 정부는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의 밸류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들이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부문별 투자·R&D 확대·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자사주 소각 및 배당·비

2)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서, PBR이 높을수록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공시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2024년 5월에 마련하여 공개하였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

첫째, 주주환원 촉진을 통한 기업의 주가부양효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은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이 미미한 상황임. 우리나라 배당성향³⁾은 최근 10년 평균이 26.0%로, 신흥국 평균(39.6%)과 선진국 평균(49.5%)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

[주요국 배당성향]

(단위: %)

구 분		신흥					선진			
		한국	대만	중국	인도	평균	미국	일본	영국	평균
배당성향	2023년	40.5*	57.6	30.5	64.7	45.2	37.1	36.2	42.5	42.2
	10년평균	26.0	55.0	31.3	38.5	39.6	42.4	36.0	129.4	49.5

*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며 높은 배당성향 기록

자료: 유관기관 합동 보도자료(‘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 2.).

또한, 45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주주환원율(현금배당·자사주매입 금액/당기순이익)을 비교해본 결과 2005년부터 2021년 사이 우리나라

3) 배당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임.

는 27~45위로 주주환원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10년부터 2018년의 기간에는 40위 이하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⁴⁾

회귀분석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주환원 수준이 높을수록 가치평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낮은 주주환원 수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음.⁵⁾

따라서, 주주환원을 확대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이 자본조달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둘째,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늘리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상장기업 주주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2019년 이후 주식투자 열풍으로 개인 주식투자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2019년에는 상장법인의 개인소유자가 611만 6,481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910만 7,228명으로 증가하고, 2021년에는 1,373만 6,703명으로 증가하였음. 개인의 소유 주식수도 2019년 441억 6,700만주에서 2023년 575억 4,400만주로 증가하였음.

4) 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2023. 5.

5) 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2023. 5.

[연도별 결산 상장법인 개인소유자 현황]

(단위: 명, %, 백만주, 종목, 주)

구 분	소유자수	비율	소유주식수	비율	평균소유 종목	평균소유 주식
2019년	6,116,481	98.9	44,167	46.8	4.19	7,221
2020년	9,107,228	99.1	49,672	50.2	5.23	5,454
2021년	13,736,703	99.2	54,369	50.7	5.9	3,958
2022년	14,241,206	98.8	56,110	50.7	5.86	3,940
2023년	14,034,097	99.1	57,544	50.7	5.97	4,100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가계의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배당이 늘어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주가가 부양되면 주주들의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조세특례를 통해 기업이 주주환원을 늘릴지 확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주주환원 확대에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기업의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결정은 기업의 경영 여건 및 자금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세제지원으로 주주환원이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미흡한 주주환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성장성,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원인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주환원 촉진만으로는 기업의 밸류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최근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로 일부 상장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여 소액주주가 주주권 상실 및 주가하락으로 이익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일반주주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상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시켜, 기업이 저평가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한국경제학회에서 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24년 5월)에 따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열악한 기업지배구조’가 1위(44%), ‘상장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낮은 성장성’이 2위(30%), ‘낮은 주주환원’이 3위(22%)로 조사되었음.

둘째,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이 결정하는 것인데, 배당 등 주주환원에 대해 정부가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왜곡되고 기업의 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기업이 이익을 사내에 유보할 것인지 배당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은 기업의 자본조달능력과 추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기업재무결정인데, 이에 정부가 개입하여 배당을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가 필요함.

핵심 사업에서 높은 마진을 달성하고 있는 경우 주주환원보다 사내유보를 통한 재투자가 오히려 기업가치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⁶⁾

6) 자본시장연구원,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의 방향성’, 2024. 8.

셋째, 개정안은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 초과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인데, 최근 주주환원이 미흡했던 기업일수록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최근 주주환원을 활발하게 했던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참고로 2024년 제418회 국회(정기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 개정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여러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① 기존에 배당성향이 높았던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②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아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③ 주주환원 증가와 주가 상승 간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의문, ④ 정부정책에 의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결과적으로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음.

문 의 처
02)6788-5154

3.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박수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 일부 분리과세(안 제100조의34)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② 주주환원 금액(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 및 자사주 소각)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 일부 분리과세 - 대상: 금전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x 주주환원금액의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과세방식: ① 원천징수 세율 14% → 9% 인하 ②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 박수영의원안 2025. 1. 23. 제출(의안번호 7799)

☐ 개정안은 기업이이익의 주주환원 유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개인주주가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25%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하려는 것임.

□ 먼저 우리나라 주식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말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으로 주요국 13위 수준이고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주요국 시가총액 및 상장기업수]

(단위: 조원, 개, %)

구 분		신흥국				선진국		
		한국	대만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영국
시가총액	2023년 말	2,558.2	2,679.7	12,349.8	5,437.0	65,334.9	8,077.9	4,000.1
	연평균증가율	+7.0%	+8.4%	+11.0%	+13.9%	+8.5%	+3.1%	△2.6%
상장기업	2023년 말	2,558	1,823	5,107	6,819	5,704	3,935	1,856
	연평균증가율	3.5%	1.8%	7.5%	△0.1%	1.6%	1.4%	△3.0%

주: 신흥국과 선진국은 MSCI 지수에 따른 분류에 따름⁷⁾
 자료: 유관기관 합동 보도자료(‘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 2.).

그러나 그동안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순자산비율(Price to Book-value Ratio, PBR)⁸⁾은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양상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음.

인도, 대만 등 신흥국의 지난 10년 평균 PBR은 1.58이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평균 PBR은 2.50에 달한 반면,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PBR은 1.0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7) <https://www.msci.com/our-solutions/indexes/market-classification>

8)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서, PBR이 높을수록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주요국 PBR 현황]

(단위: %)

구 분		신 흥 국					선 진 국			
		한국	대만	중국	인도	평균	미국	일본	영국	평균
PBR	2023년 말	1.05	2.41	1.13	3.73	1.61	4.55	1.42	1.71	3.10
	10년평균	1.04	2.07	1.50	3.32	1.58	3.64	1.40	1.71	2.50

주: 신흥국과 선진국은 MSCI 지수에 따른 분류에 따름
 자료: 유관기관 합동 보도자료(‘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 2.).

이와 같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유사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고 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소액주주 보호에 취약한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 정보의 불투명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함께 낮은 배당성향이 지적되고 있음.

실제로 미국, 일본 등 45개국을 비교한 결과 2010년부터 2018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40위 이하의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⁹⁾.

□ 개정안은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를 대상으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의 일부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주주환원 확대기업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¹⁰⁾을 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중에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

9) 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 2023. 5.

10)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년도 현금배당에 주주환원금액의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자는 2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2천만원 한도 9%) 중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여 가계소득 및 소비를 증가시키고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고 45%의 세율을 직면하게 되며,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따라서 지배주주는 배당보다 사내유보를 선호하고 일반주주 역시

항 목	내 용
기업개요	업종,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
현황진단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 선정 및 분석
목표설정	핵심지표 관련 중장기 목표 제시
계획수립	사업 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이행평가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내용 및 보완 필요사항
소통	주주총회, 실적 발표회 등 소통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누진 종합과세되는 배당금보다 주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인 양도차익을 선호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성향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기업의 배당금이 증대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및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내수 활성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배당을 선호하는 가계의 자금이 기업에 유입되어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이 감소하고 투자여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및 분리과세 선택 허용은 주주의 배당 선호도를 높여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이는 가계소비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 제고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기업의 가치 제고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배당률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기업가치에 대한 저평가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주요국 배당성향]

(단위: %)

구 분		신 흥 국					선 진 국			
		한국	대만	중국	인도	평균	미국	일본	영국	평균
배당성향	2023년	40.5*	57.6	30.5	64.7	45.2	37.1	36.2	42.5	42.2
	10년평균	26.0	55.0	31.3	38.5	39.6	42.4	36.0	129.4	49.5

*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며 높은 배당성향 기록

주: 신흥국과 선진국은 MSCI 지수에 따른 분류에 따름

자료: 유관기관 합동 보도자료(‘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 2.).

비록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에 비거주자 및 법인주주는 제외되고 있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중장기 자사주 소각 정책, 자사주 매입 규모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고 정부가 주주환원에 대한 다각적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증가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

세제지원과 기업 밸류업 간 연계성이 약하고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기업의 배당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24. 9. 2.)에 대하여 밸류업 효과성에 대한 이견이 기획재정부

원회 조세소위원회¹¹⁾에서 제기된 바 있고, 2024년 12월 세법개정
시¹²⁾ 동 내용은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둘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응능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5%의 한계세
율을 적용¹³⁾받게 되는데, 주주환원 확대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
금배당의 일부에 대하여 25% 세율로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실
질적인 세율 인하 효과가 발생함.

또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다 낮은 한계세율 구간에 직면하게 되어 또 다른 조세 감
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소득수준이 높은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의 경감 혜택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셋째, 배당성향이 높았던 기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특례 배당소득금액은 차년도 현금배당에 분

11)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2024.11.20.)

1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617호, 2024. 12. 31., 일부개정]

13)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
~1,400만원	6%
1,400만원~ 5,000만원	15%
5,000만원~ 8,800만원	24%
8,800만원~ 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45%

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해당 산식에 따르면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이 클수록 과세특례 대상 금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배당 선호도가 높은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주주환원비율이 높았던 기업보다 주주환원이 미흡하였으나 향후 환원금액을 증가시킬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기존에 배당성향이 높았던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공제율 상향,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제도 개요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30%¹⁴⁾,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30%,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함.

또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및 도서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한도를 별도로 적용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율		공제한도		
구분	공제율	구분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① 신용카드	15%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②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③ 전통시장	40%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200만원
④ 대중교통	40%			
⑤ 도서·신문·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 등	30%			-

14)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9년 9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한이 10차례 연장되어 2025년말 일몰 예정임.¹⁵⁾ 2005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신용카드 사용 유도차원의 조세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공제율을 소폭 인하하였으며,¹⁶⁾ 2007년에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의 활성화 정도를 감안하여 공제문턱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로 상향하고, 공제적용률을 20%로 증가시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였음.¹⁷⁾ 이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직불·선불카드의 공제율 인상(2009년 개정),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1년 개정),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3년 개정), 서민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급여수준별 한도 조정(2016년 개정), 도서공연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2018년 개정) 등 소비심리 개선과 건전소비 문화 장착,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¹⁸⁾

15) 최초 도입 시 적용기한은 2002. 11. 30.이었으나 2005. 11. 30. ⇒ 2007. 11. 30. ⇒ 2009. 12. 31. ⇒ 2011. 12. 31. ⇒ 2014. 12. 31. ⇒ 2016. 12. 31. ⇒ 2018. 12. 31. ⇒ 2019. 12. 31. ⇒ 2022. 12. 31. ⇒ 2025. 12. 31.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음

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20%에서 15%로 하향조정함.

17) 이를 통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늘려야하며, 일단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음. 또한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의 지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에서 배제하였음.

18) “2018 조세특례심층평가(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2018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1조 8,537억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3조 9,458억원에 달하였으며, 2024년에는 4조 1,183억원, 2025년에는 4조 3,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도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조세지출액	18,537	21,176	22,553	24,698	31,882	31,675	39,458	41,183	43,69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 및 소상공인 대상 공제 사용분 소득공제 신설 등(박용갑의원안, 박수영의원안)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신설></td><td></td></tr><tr><td>- 대중교통</td><td>40%</td></tr><tr><td>- 전통시장 - <신설></td><td>4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신설>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 <신설>	40%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영세소상공인(박수영의원안)</td><td>30%</td></tr><tr><td>- 대중교통</td><td>40%</td></tr><tr><td>- 전통시장 - 소상공인 (박용갑의원안)</td><td>50% (5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영세소상공인(박수영의원안)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 소상공인 (박용갑의원안)	50% (5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신설>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 <신설>	4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영세소상공인(박수영의원안)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 소상공인 (박용갑의원안)	50% (50%)																																		
○ 공제 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 한도</th><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r><tr><td>문화비</td><td></td><td>-</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 공제 한도: (현행과 같음)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h colspan="2">공제 한도</th><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d rowspan="2">해당없음</td></tr><tr><td>문화비</td></tr><tr><td>25년도 상반기 소비 증가분</td><td colspan="2">100만원(박수영의원안)</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해당없음	문화비	25년도 상반기 소비 증가분	100만원(박수영의원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해당없음																																
	문화비																																		
	25년도 상반기 소비 증가분	100만원(박수영의원안)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 (박수영의원안) 2028.12.31. (박용갑의원안)																																		

* 박용갑의원안 2024. 12. 20. 제출(의안번호 6793), 박수영의원안 2025.1.23. 제출(의안번호 7799)

□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 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조정하며(박용갑의원안),
- ②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¹⁹⁾(이하 “영세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박용갑의원안, 박수영의원안).

먼저 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 비해 10%p 높은 50%로 상향조정 하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체감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비둔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소비심리의 자극을 도모할 수 있음.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²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 속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져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며, 대외신인도의 하향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를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상향되는 경우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에 기

19).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대가(나목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하인 사업자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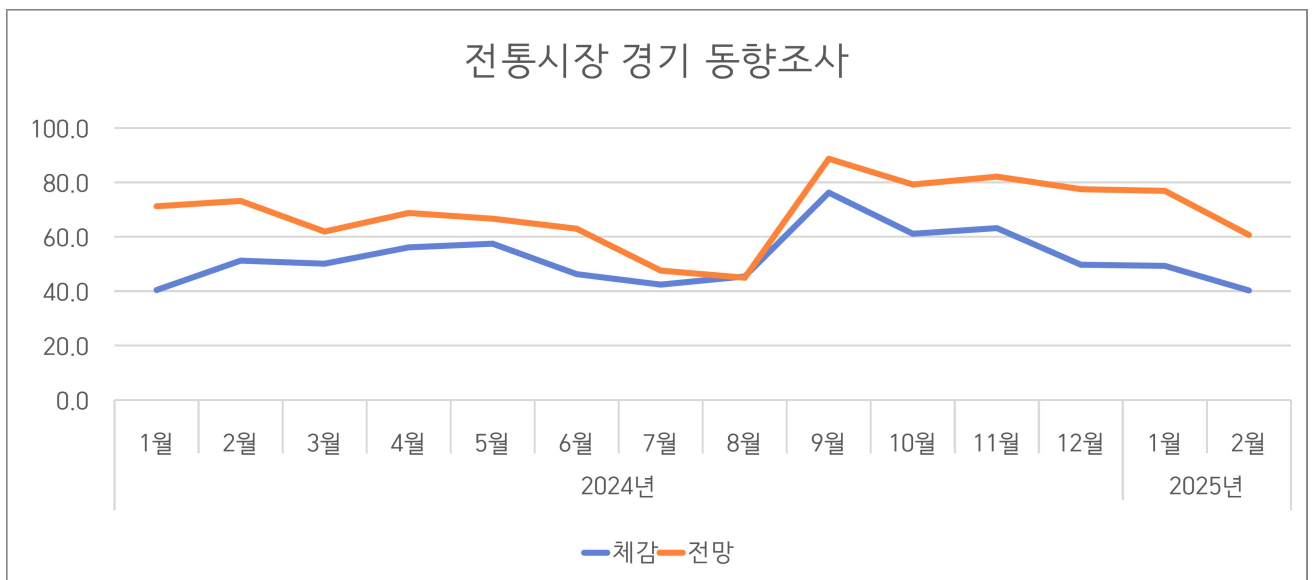
2023년 매출액 기준 1억 400만원 이하의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 전문직종등은 제외됨.

20) 「2025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2025. 1. 2.

여할 가능성이 있음.

둘째,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2024년 이후 전통 시장 체감 BSI가 100 미만으로 낮게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확대는 전통시장으로의 소비자 방문 및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전통시장 체감 및 전망 경기지수(BSI)]



* BSI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1.

□ 다만, 전통시장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동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식료품 주 구입장소 중 재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에 불과하였고, 식료품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은 접근성, 가격, 품질 순이며, 저렴

한 가격을 기준으로 식료품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감소추세인 것으로 조사²¹⁾되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정책은 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소비 진작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식료품 주 구입 장소 비교]

(단위: %)

구입 장소	비중
대형할인점	32.5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	29.9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	15.7
재래(전통)시장	12.2
통신판매	5.4
편의점	1.2
친환경 식품 전문점	0.7
백화점	0.7
기타	1.7

자료: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p.6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가구의 식료품 주 구입장소 선택 이유]

(단위: %)

이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30.3	29.5	31.3	27.8
- 품질이 좋아서	19.9	18.7	19.2	18.3
- 가격이 저렴해서	19.5	18.5	16.0	18.8
- 식료품 외 다른 상품도 구입	13.1	14.2	15.5	15.0
- 직접 배달해주므로	6.4	5.8	5.3	6.4
- 상품이 다양해서	9.6	10.8	10.2	10.6
-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1.2	2.1	2.2	2.7
- 지역산 농식품 구입	0.0	0.4	0.2	0.4

자료: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p.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21) 「2023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12.

둘째, 소비진작을 위한 소득공제율의 상향 정책이 상시화될 경우 일정 기간 도과 후 해당 정책의 효과가 약화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항구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²²⁾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50%로 상향조정할 경우 2026년~2029년 기간 동안 연평균 3조 3,245억원, 총 13조 3,2981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박용갑의원안)

□ 다음, ② 소상공인 및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먼저 박용갑의원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²³⁾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소득공제율은 개정안에서 규정한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50% 공제율을 적용하며,

박수영의원안은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불한 금액의 30%에

22) 개인소득세 인하는 2~3년 이후 부터는 GDP와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모두 소멸된다는 경험적 연구 또한 존재함. "Short term tax cuts, long term stimulu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2, James Cloyne.

23) 「소상공인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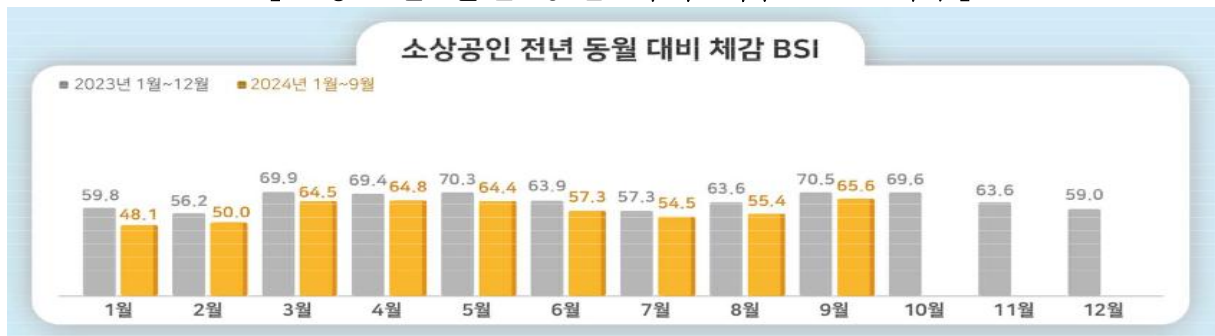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소상공인 체감 BSI²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됨.

[소상공인 전년 동월 대비 체감 BS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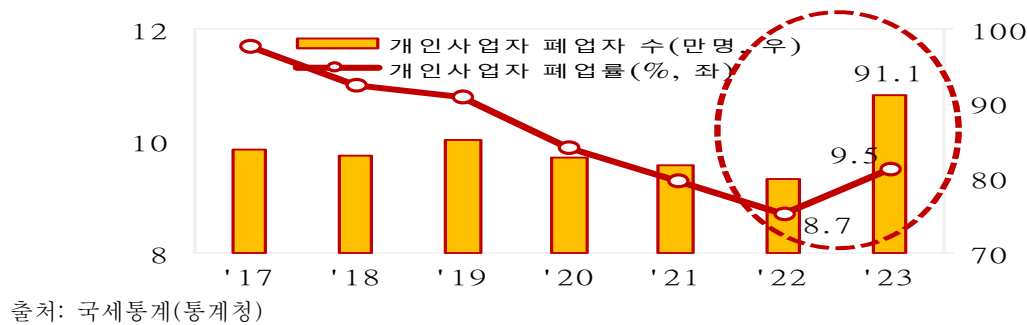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10.

한편, 코로나19 지원 정책의 영향 등으로 2022년까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2023년에 들어 상승세로 전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24) BSI 지수란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경기 예측 지표로서, BSI 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경기 실적이 호전되었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인 경우는 경기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함.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둘째, 통상적으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전통 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세제지원 정책을 과거 추진²⁵⁾하였는데,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대표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412만 5,000개²⁶⁾로 조사되었는데, 2022년 전통시장 내 점포 수는 23만 2,206개²⁷⁾로 조사되어 전체 소상공인 중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비중은 약 5.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²⁸⁾.

따라서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5)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p 한시 상향하여 적용한바 있음.

26)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및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3.12.27.

27)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12.

28) 참고로 위 조사들에 따를 때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는 714만 3,000명이고, 전통시장 점포 종사자 수는 31만 6,315명으로 전통시장이 약 4.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첫째, 공제 대상 확대에 의한 세수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감면액이 약 3조 9,458억원²⁹⁾이고,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의 연간 총 매출액은 전통시장의 연간 총 매출액의 약 24.9배 수준임. 개정안과 같이 30%~5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소상공인(박용갑의원안) 및 영세소상공인(박수영의원안)이 포함되는 경우 적용 대상의 확대에 상당 규모의 세수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022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액 비교]

구 분	사업체 수	연간 총 매출액
소상공인	4,125,000개	965조 2,500억원
전통시장	232,206개	38조 8,179억원

자료: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3.12.27.
 「20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 12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전통시장 소비를 구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박용갑의원안의 경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총 공제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즉 소상공인 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법동조 제10항에 따르는 공제한도(연간 250만원 단, 과세연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를 따르고 있음.

29) 2024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4조 1,1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에 비해 비대면 주문이 간편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다른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한도 역시 전통시장사용분 등과 합산하여 적용됨. 이 경우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였을 물품을 다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를 유인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전통시장사용분 추가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박용갑의원안의 경우 소상공인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소비자가 소비 시 소상공인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소득공제 집행을 위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르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³⁰⁾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30)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단서 생략)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각 호 생략)

(* 각호: 일용근로자 3개월 내 근로자, 연구전담요원 등)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각 호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기본법」 상 “소기업” 여부는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및 평균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의 요건 중 “상시 근로자” 여부는 근로자의 임원 여부 및 근로기간,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결정³¹⁾되므로 일반 소비자가 소비 행위 시 해당 사업자가 소상공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또한, 사후적으로 소비항목별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의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음.

넷째, 박수영의원안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 영세소상공인을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워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소지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여부는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세무정보로,³²⁾ 국민이 일상 중 이를 구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단서 생략)

(각 호 생략)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별표3 생략])

31) 또한,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은 중소기업으로 보고,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가 소상공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

32)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자 유형을 구별하여 소비를 할 가능성이 낮아 해당 사업자들의 매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두 개정안 모두 소상공인 및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관련 별도의 공제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존의 공제한도³³⁾를 따르고 있음. 이로 인해 기존의 소비 사용분으로 공제한도를 충족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소상공인 및 영세소상공인 업체에서의 추가 소비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3) 연간 250만원 단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다. 전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
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박수영의원안)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6조의2)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항목 및 공제율:		2025년 전년대비 소비 증가분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 공제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항목 및 공제율: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td><td>40%</td></tr><tr><td>- 전통시장</td><td>40%</td></tr><tr><td>- <신설></td><td></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40%	- <신설>		<table><tr><th>구분</th><th>공제율</th></tr><tr><td>- 신용카드</td><td>15%</td></tr><tr><td>- 현금영수증·직불카드</td><td>30%</td></tr><tr><td>-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td><td>30%</td></tr><tr><td>- 대중교통</td><td>40%</td></tr><tr><td>- 전통시장</td><td>40%</td></tr><tr><td>- 영세소상공인(박수영의원안)</td><td>30%</td></tr><tr><td>-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td><td>20%</td></tr></table>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40%	- 영세소상공인(박수영의원안)	30%	-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40%																																			
- <신설>																																				
구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 문화체육사용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한정	30%																																			
- 대중교통	40%																																			
- 전통시장	40%																																			
- 영세소상공인(박수영의원안)	30%																																			
- 2024년 상반기 대비 2025년 상반기 5% 초과 사용금액 증가분	20%																																			
공제 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2">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r><tr><td>문화비</td><td></td><td>-</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공제 한도: <table><tr><th colspan="2">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tr><td colspan="2">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4">추가 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3">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r><tr><td>도서 등</td></tr><tr><td>25년 상반기 소비증가분</td><td colspan="2">100만원</td></tr></table>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 등	25년 상반기 소비증가분	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문화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 등																																			
	25년 상반기 소비증가분	100만원																																		

* 박수영의원안 2025. 1. 23. 제출(의안번호 7799)

☐ 개정안은 2025년 상반기 동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³⁴⁾ 중 전년

3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

상반기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다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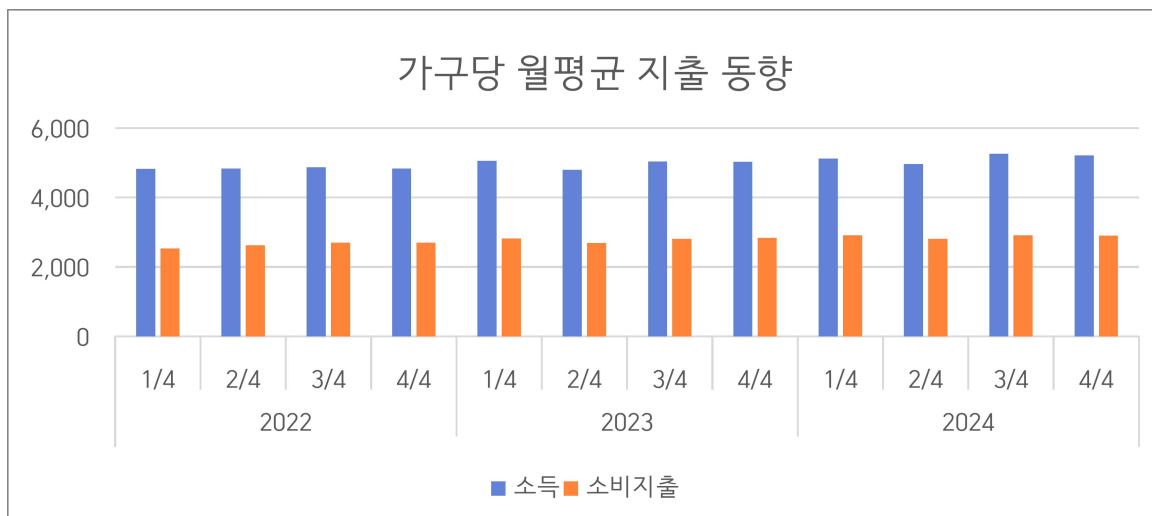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2021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1년 연말정산에서 최초 적용되었음. 그 당시는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였으며, 전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1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설계되었음. 2022년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한 지원책으로 동 소득공제의 기한을 2022년까지 1년 연장하고, 2022년 전통시장사용금액 중 전년도 사용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하며, 공제율을 20%로 10%p 상향 조정하였다가, 2023년 4월 동 조항들이 삭제된 바 있음. 이후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2024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다시 시행된 바 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이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이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이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첫째, 가계 소비심리를 자극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³⁵⁾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속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며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져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며 대외신인도의 하향도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하여 지난 11월 전망치인 1.9%에서 0.4%p 하향조정한 바 있어, 경제의 하방압력은 가중되는 상황임. 한편, 통계청의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4분기 이후 완만한 상승추이를 보이던 가구당 소득 및 월평균 소비지출이 2024년 2/4분기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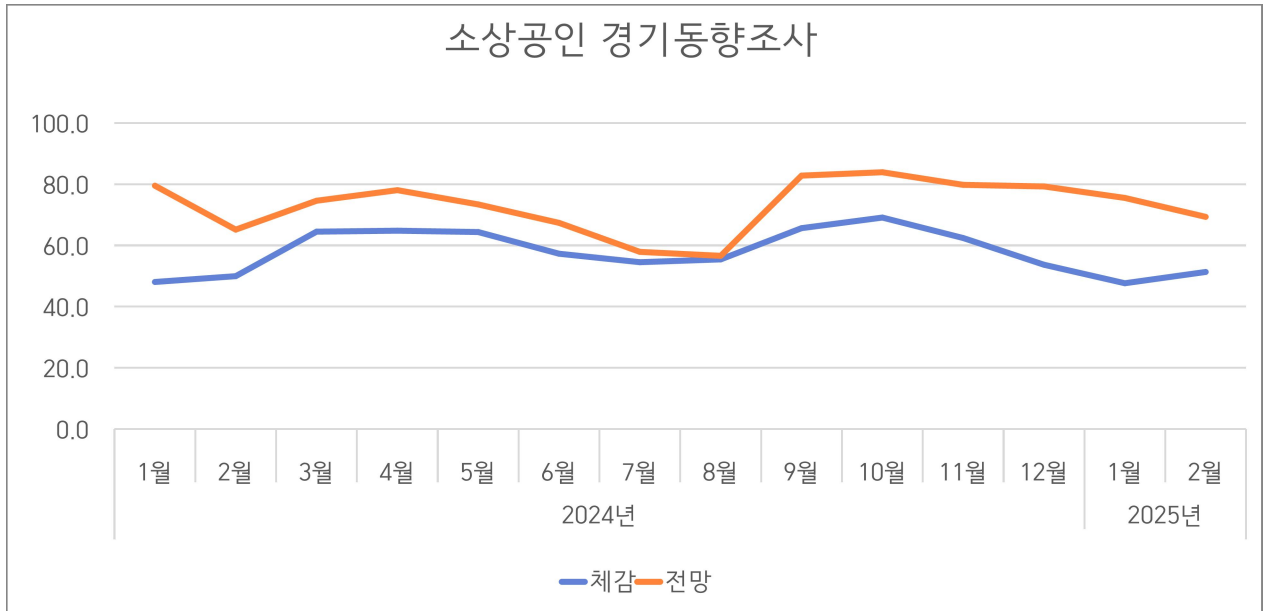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그 공제비율을 20%로 이전에 비해 상향할 경우 가계 소비심리 회복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35) 「2025년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2025. 1. 2.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둘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소상공인시장 체감 경기지수(BSI)]



* BSI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
자료: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1.

2024년 이후 소상공인 체감 및 전망 BSI 모두 100 미만으로 낮게 조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할 경우, 2025년 상반기 내의 소비 전반을 진작시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4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경우 자칫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이연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의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한시적인 제도 시행으로 민간소비를 유도하려는 정책이나,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소득공제가 상시화 될 경우, 민간은 해당 연도 소비를 억제하고, 차년도 소비를 증대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소비 성향을 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연도 소비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아, 당초 개정안이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소지가 있음.³⁶⁾

둘째, 개정안은 2025년도 상반기 중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 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인데, 세법개정 및 시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민간소비를 진작하고 자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소득공제의 적용 기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는 경우, 소비여력이 큰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정부는 2025년 4월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동 추가경정예산안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대비 카

36) 미국의 영구적인 Bush tax cut은 0.29의 재정승수 효과를 얻었으나, 2008년 일회성 세금 도입은 그 재정승수가 1.26으로 일시적인 세제지원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적 연구가 존재함.Zandi, Mark. "A Second Quick Boost From Government Could Spark Recovery"
또한 개인소득세 인하는 2~3년 이후 부터는 GDP와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모두 소멸된다는 경험적 연구 또한 존재함. "Short term tax cuts, long term stimulu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2, James Cloyne.

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³⁷⁾을 신설하여,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음.³⁸⁾

문 의 처

02)6788-5158

37)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명품, 온라인 거래(일부)등 제외)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대비)의 20%를 최대 30만원(월 10만 한도) 한도로 환급(1.4조 원)

3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